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정 2011. 4. 1. (규정 제7호)

일부개정 2015. 4. 29. (규정 제10호)

일부개정 2018. 1. 26. (규정 제15호)

일부개정 2019. 9. 4. (규정 제18호)

전부개정 2021. 5. 25. (규정 제47호)

일부개정 2023. 2. 15. (규정 제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춘천문화원 문화학교의 명칭은 ‘춘천문화원 문화학교’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 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문화학교는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간 운영 및 시간) 문화학교의 운영 및 연간 운영 시간 등은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문화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 2. 15.>

②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학교 담당자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사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과 폐강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장 강좌 개설

제9조(선정 기준) 강좌 개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2. 수강생의 요구 및 선호도

3.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당분야의 전문가 존재 여부

제10조(강좌 개설) 문화학교 강좌는 수강생과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설한다.

1. 문화원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2. 평생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3. 지역문화와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4. 재사회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11조(강좌 선정) 강좌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강좌 개설을 외부에서 제안한 경우에는 강좌개설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12조(심의생략) 10회 이내의 단기강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운영

제13조(교육시간) 강좌는 주 1회 120분(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주당 수업시수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방법)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은 출석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자격과 선발) 문화학교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합일 경우에는 본원의 회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과목별로 적정액으로 정하며, 수강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을 취소 처리한다.

② 재료비의 환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환불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해산

2. 문화원 또는 강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문화원은 제2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료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재료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1. 20% 감면 : 3과목 이상 수강

2. 30% 감면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본인, 본원 퇴직자 본인

3. 50% 감면 : 본원 퇴직자 본인

4. 1개 강좌 100% 감면 : 본원 직원, 이사, 운영위원

5. 전강좌 100% 감면 : 전직 원장 본인 및 배우자

② 제1항의 감면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증빙서류(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폐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정원의 75% 미만일 경우

2. 등록생 대비 수료생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② 2년 연속해서 폐강된 과목은 차년도 개설 강좌에서 제외한다.

제20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과목의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5장 강 사

제21조(강사 위촉과 해촉)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과목과 관련된 학과 전공자

2. 해당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과목에 대한 지도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 강사의 위촉은 초빙 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며, 공개모집에 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공개모집시 강사 선발은 [별표 2]의 선발 기준에 따르며,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서 (별지 제4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3.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 등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재료비 이외의 실습비 등을 임의적으로 징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과반수 이상이 강사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7. 기타 문화원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준수의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제규정 및 운영 기본방향을 준수한다.

2. 강사는 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강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곤란한 경우 문화원에 사전 통보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사는 효율적인 강의와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만족도 조사) ① 원장은 그 해의 강의가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 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5.>

②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 20% 내의 강사는 강의배정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제6장 상벌 등

제24조(포상) 원장은 수강태도 등이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을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금지행위) 강사 및 수강생은 교육기간 동안 문화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1. 문화원 내의 풍기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

2.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3. 정치행위

4.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및 농성 등

제26조(징계) 원장은 강사 및 수강생이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 이 규정이 확정 시행되기까지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표 1] |
|  |
| 재료비 환불 기준 (제17조 제2항 관련) |

|  |  |  |
| --- | --- | --- |
|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사유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재료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6조 제1항 제3호의 환불사유  (본인의 수강 포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재료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재료비의 2/3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재료비의 1/2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비 고 |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표 2] |
|  |
| 강사 선발 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등급별 점수** | | | | | | | | | |
| 강의 경력  (30) | 9년 이상 | 9년 미만  ~ 7년 | | 7년 미만  ~ 5년 | | 5년 미만  ~ 3년 | | 3년 미만  ~ 1년 | | 1년 미만 |
| 30 | 25 | | 20 | | 15 | | 10 | | 5 |
| 관련자격 소지  (15) | 국가공인 | | | | 민간 | | | | 없음 | |
| 15 | | | | 7 | | | | 1 | |
| 수상 실적  (20) | 대통령 | | 국회의장 | | 국무총리 | | 장관/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20 | | 15 | | 10 | | 7 | | 3 | |
| 관련저서 집필  (10) | 4권 이상 | | 3권 | | 2권 | | 1권 | | 없음 | |
| 10 | | 8 | | 6 | | 4 | | 2 | |
| 인지도(언론보도 등)  (10) | 10건 이상 | | 9∼7건 | | 6∼4건 | | 3∼1건 | | 없음 | |
| 10 | | 8 | | 6 | | 4 | | 2 | |
| 학 력  (15) | 대학원졸 | | 대졸 | | 전문대졸 | | 고졸 | | 고퇴 이하 | |
| 15 | | 12 | | 9 | | 6 | | 3 | |
| ※ 강의경력 10시간을 1월로 계산, 관련자격 및 저서(논문 포함) 등은 해당 과목관련만 인정  ※ 수상 실적은 최대 20점을 넘지 못하며 지원자 명의로 발급된 상장만을 인정, 등급은 훈격별로 구분  ※ 동점자는 강의경력 > 관련자격 소지 > 수상 실적 > 학력 순 고득점자로 선발 | | | | | | | | |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 2. 15.> |
|  |
| 강좌 심의 배점 기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 **배점** | | **세부항목** | | **배점기준** | **비고** |
| 정성  평가 | 운영목적  적합성 | 20 | | 매우 우수 | | 20 |  |
| 우수 | | 17 |
| 보통 | | 14 |
| 미흡 | | 11 |
| 매우 미흡 | | 8 |
| 강의계획서  충실도 | 20 | | 매우 우수 | | 20 |  |
| 우수 | | 17 |
| 보통 | | 14 |
| 미흡 | | 11 |
| 매우 미흡 | | 8 |
| 강좌의  참신성 | 10 | | 매우 우수 | | 10 |  |
| 우수 | | 8 |
| 보통 | | 6 |
| 미흡 | | 4 |
| 매우 미흡 | | 2 |
| 수강생  선호도 | 20 | | 높음 | | 20 | 신규강좌의 경우는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 보통 | | 15 |
| 낮음 | | 10 |
| 정량  평가 | 강사의  전문성 | 30 | 15 | 해당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가, 민간 자격증  (1급 상당) | | 15 |  |
| 해당 전문기관 수료  또는 국가, 민간 자격증  (2급 상당) | | 10 |
|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 | 5 |
| 15 | 해당분야 지도경력 최근 5년 이내 | 10건 이상 | 15 |
| 5건 이상 | 10 |
| 5건 미만 | 5 |
| **총 점** | | | | | | **100**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
| 재료비 감면 신청서 |

|  |  |  |
| --- | --- | --- |
| **신 청 자** |  | |
| **해당사항** |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본원 퇴직자 | |
| **제출서류** |  | |
| **강 좌 명** |  | |
| **수강기간**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목적 | 재료비 면제 대상자 확인 |
| 수집항목 | 성명, 면제 해당 사유, 강좌명, 수강기간 |
| 보유기간 | 1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재료비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

춘천문화원장 귀하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

제 20OO-OOO호

**수 료 증**

성 명 O O O

위 사람은 춘천문화원 문화학교 OOOO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춘천문화원장 O O O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지원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제출 시 첨부된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인적사항 | 성명(한글) | | | | (한자) | | | | 사진  (3㎝×4㎝) |
|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주소 | | | | | | | |
| 자택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
| E-mail | | | | | | | |
|  | | | | | | | | | |
| 지원사항 | 과목명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기 간 | | | 학교명 | | | 학 과 | | 학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기 간 | | | 근무처 | | | 직위(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강의 경력 및 관련자격 | | | | | | | | | |
| 주요 강의경력  \*( )는 강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자격/교육이수 | |  | | | | | | | |
| 언론보도 | |  | | | | | | | |
| 관련저서(논문)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관련 자격증 사본(자격증 보유자만 해당됨) | | | | |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 |
| \*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 인적사항  (동의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
|  | | | | | | |
| 정보이용 관련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춘천문화원 | | | | |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춘천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 | |
| 개인정보 이용항목 | “강사 지원신청서”의 기록사항과 기타 강사선발 심사를 위한 필요 정보,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 |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지원신청서 등 기타 관련 서류와 같이 2년간 보유 | | | | |
|  | | | | | | |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춘천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춘천문화원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 부동의**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춘천문화원장 귀하 | | | | | | |

※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춘천문화원의 강사 선발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학교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3. 2.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평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구분** | | | **강좌명** | | | **강사명** | | | | | | **강사 위촉일자** | | |
| [ ] 신규  [ ]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 | | **착안사항** | | | | **평가결과(5단계 척도)** |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모니터링  (50점) | 강의 전문성  (25) | | | 강의에 대한 전문지식 정도 | | | | 10 | 8 | | | 6 | 4 | 2 |
| 교육 및 학습목표 부합여부 | | | | 10 | 8 | | | 6 | 4 | 2 |
| 수강생에 대한 이해 정도 | | | | 5 | 4 | | | 3 | 2 | 1 |
| 강의 기술성  (30) | | | 강의내용의 논리적 체계성 | | | | 5 | 4 | | | 3 | 2 | 1 |
| 강의의 핵심내용 전달정도 | | | | 5 | 4 | | | 3 | 2 | 1 |
| 효과적인 강의기법 사용 | | | | 5 | 4 | | | 3 | 2 | 1 |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 | | | 5 | 4 | | | 3 | 2 | 1 |
| 적절한 사례 제시 여부 | | | | 5 | 4 | | | 3 | 2 | 1 |
| 결론 및 내용요약 능력 | | | | 5 | 4 | | | 3 | 2 | 1 |
| 교육 효과성  (25) | | | 수강생 학습 동기부여 | | | | 10 | 8 | | | 6 | 4 | 2 |
| 수강생 강의 몰입도 | | | | 10 | 8 | | | 6 | 4 | 2 |
| 수강생 자발적 참여 유도 | | | | 5 | 4 | | | 3 | 2 | 1 |
| 강의 태도  (20) | | | 자신감, 열정 | | | | 5 | 4 | | | 3 | 2 | 1 |
| 복장 및 품위 | | | | 5 | 4 | | | 3 | 2 | 1 |
| 강의자세, 표정, 시선 처리 | | | | 5 | 4 | | | 3 | 2 | 1 |
| 말의 속도 및 강약, 어투 | | | | 5 | 4 | | | 3 | 2 | 1 |
| 모니터링 점수**(100점만점 × 0.5점)** | | | | | | | 합계 점 | | | | | | |
|  | | | | | | | | | | | | | | |
| 수강생  설문조사  (50점) | | 강사 만족도  (5.0만점 × 10점) | | | | | 종합평가  결과 | | | 강의모니터링 점수 +  수강생 설문조사 점수 | | | | |
| 점 | | | | | 점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자 | | | | | 직책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